

제 호

석유대체연료 판매업(대리점·주유소·판매소) 등록증

1. 성 명(대표자): (생년월일:)
2. 상 호:
3. 소 재 지:
4. 취 급 제 품:
5. 저장시설의 수: 주유기의 수: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 · 도 지 사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직인